

「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4월 2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5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5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19. 3.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본청의 물품출납원 변경
별표 1 본청의 물품출납원을 “경리담당”에서 “계약담당”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 조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,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“경리”를 “계약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